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18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배현진·황보승희·이철규

임병헌 · 최형두 · 이용호

정희용 · 김성원 · 조명희

서일준 · 정점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

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의안 번호 제175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5 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520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 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를 "매장유산을 보존하여"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을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란"을 ""매장유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 다.

제3조의 제목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를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 범위)"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란"을 "문화유산"이란"으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와"를 "매장유산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을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문화재 보존 조치"를 "국가유산 보존 조치"로, "문화재 보존 존에"를 "국가유산 보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 보존"을 "국가유산 보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를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을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제3항 본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의"를 "매장유산의"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등)"을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완료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을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중문화재"를 "수중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발굴된 매장유 산의 보존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장문 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매장문화재에"를 "매장유산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현상변경)"을 "(매장유산 현상변경)"으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을 "발견신고된 매장 유산의 처리 등"으로 한다.

제17조 중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을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을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으로,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을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라"를 "국가유산이라"로, "문화재가 아닌"을 "국가유산이 아닌"으로, "문화재가 아니라"를 "국가유산이 아니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을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는"을 "매장유산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을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 이"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을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

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을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을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을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7조의2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을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 유산"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이나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자연유산"으로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을 각각 "매장유산을"로 하며, 같은 항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을 "매장유산 발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장문화재를"을 "매장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자연유산을"로한다.

제34조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를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한다.

②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한다.

③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⑤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1조제1항제8호 중 "매장문화재"를 각각 "매장유산"으로 한다.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 조사 결과
-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u>법률</u>	<u>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매장문화재</u>	제1조(목적) <u>매장유산을</u>
<u>를 보존하여</u> 민족문화의 원형	보존하여
(原形)을 유지·계승하고, <u>매장</u>	<u>매장</u>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	<u>유산을 효율적</u>
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u>"매장문</u>	제2조(정의) <u>"매장유산"</u>
<u>화재"란</u> 다음 각 호의 것을 말	이란
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	1
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u>문</u>	<u>문</u>
<u>화재</u>	<u>화유산</u>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2
있는 유형의 <u>문화재</u>	문화유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
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어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 범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	위)
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u>문화유산"이란</u>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기원 <u>유형문화재</u>
-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 자 하는 자는 <u>매장문화재가</u>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u></u> 문화·	<u>유산</u>
2	
유형문화유산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	역의 보
<u>호)</u>	
<u>매장유산이</u>	
	"मो
장유산	
매장유산	유존지역
으	
제5조(개발사업 계획・	시행자의
책무) ①	
매장유산	o]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u>매장문화재를</u>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 하여야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
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
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 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매장문화재</u>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u>매장문화재</u> 조 사기관이 수행한다.
- ③ (생 략)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

②
<u>매장유산을</u>
제2장 <u>매장유산 지표조사</u>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u>국</u>
<u> 가유산이</u>
ц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
사) ①
<u>매장유산</u>
<u>.</u>
②
매장유산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 조에 따른 <u>매장문화재</u> 조사기 관이 수행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저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 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u>매장</u>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매장</u> 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 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매장문</u> 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u>매장유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u>개발사업 협의)</u> ①
<u>매장유산</u>
② 매장유
<u>산</u>
③ <u>매장유</u>
<u>산</u>
<u>매장유산과</u>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 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 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 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u>문화재</u>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 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 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 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 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국가유산 보
<u>존 조치</u>
<u>국가</u>
<u>유산 보존에</u>
②
국가유산
<u>보존</u>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
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 국가유산

② (생략)

제3장 <u>매장문화재의 발굴 및</u>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② (생략)
- ③ <u>매장문화재</u>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u>문화재의</u>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④・⑤ (생략)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
1. ~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대장유산
<u> </u>
국가유산의
<u> </u>
④·⑤ (현행과 같음)

1조에 따라 <u>매장문화재의</u> 발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 에 따른 <u>매장문화재 조사기관</u> 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 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 수·완료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u>매장</u>

<u>매장유산의</u>
<u>매장유산 조사기관</u>
②
매장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른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연유산
위원회
③・④ (현행과 같음)
∥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
· 완료 신고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매장유

문화	<u>재</u> 의	발글	70	끝난	날.	부	터
20일	이내	에	문화	체육관	광-	부	렁
으로	정하	는 1	바에	따라	문	화.	재
청장여	에게	완료	신고	서를	제	출 돌	하
여야	하다.						

-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저 등) ① (생 략)
 - ② 문화재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 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 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 를 지시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저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학술조 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u>매장문화재</u>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 1. (생략)
 -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 3. (생략)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u>매장</u>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특

<u>산</u>
∥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매장</u>
유산
③ (현행과 같음)
세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
<u>굴)</u> ①
<u>매장유산</u> -
1. (현행과 같음)
2. <u>수중유산</u>
3. (현행과 같음)
4 <u>매장</u>
유산

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u>매장문화재</u> 조사기관으로 하여 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⑦ (생 략)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 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

②
<u>म</u>
장유산
③
<u>매장유산</u>
<u>.</u>
4
<u>매장유산</u>
⑤ ~ ⑦ (현행과 같음)
세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조치) ①

된 <u>매장문화재가</u> 역사적 · 예술 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u>「문화재보호법」 제8조</u>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 게 그 발굴된 <u>매장문화재에</u>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1. 현지보존: <u>문화재</u>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 2. 이전보존: <u>문화재</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 3. (생략)
- 4. 그 밖에 <u>매장문화재</u>의 보존 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 <u>매장유산이</u>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u>매장유산에</u>
,
1 <u>국가유산</u>
2 <u>국가유산</u>
3. (현행과 같음)
4 <u>매장유산</u>
②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u>매장문화재</u>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그 밖에 발굴된 <u>매장문화재</u>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 은 자는 <u>매장문화재</u> 유존지역 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학술 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 (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문 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 ⑦ (생 략)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u>매장</u> 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

<u>매장유</u>
<u>산</u>
③ (현행과 같음)
④ <u>매장유산</u>
··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u>매장유산</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u>매장</u>
유산

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 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 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u>매장문화재</u> 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u>매장문화재 유존지역</u>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 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 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매장유산(동산에 속
하는 국가유산은
•
제4장 <u>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u>
<u> 처리 등</u>
제17조(발견신고 등) <u>매장유산을</u>
<u>매장유산 유존지역</u>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u>처리 방법)</u> ①
<u>국가유산의</u>

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 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 화재의 처리 방법) ① 「유실 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 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

2
<u>국가유산</u>
세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
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u>국가유</u>
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u> 국</u>

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 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 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 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 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 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다.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 저 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 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
2
국가유산으로
<u>국가</u>
<u>유산이라</u>
<u>국가유산이 아닌</u>
<u>국가유산이 아니라</u> -
세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제253조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 상 <u>문화재</u>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 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

국가유산의
<u>국가유산이</u>
.
②
<u>국가유산</u>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u>국가유</u>
<u>산을</u>
국가유산의

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있다.

- ② 제17조에 따라 <u>매장문화재</u> <u>가</u>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 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 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 1항에 따라 발굴된 <u>매장문화재</u> 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u>문화</u> 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 법)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2)	
	<u>.</u>
	② <u>매장유산이</u> -
<u>산의</u>	<u>매장유산은</u>
<u>산의</u>	
<u>산의</u>	
<u>산의</u>	
<u>산의</u>	③
<u>산의</u>	
	국가유
	산의
④ (현행과 같음) 1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 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	
④ (현행과 같음) 1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 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	
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	
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	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
	리 방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장 <u>매장문화재 조사기관</u>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u>등록)</u> ① <u>매장문화재</u>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

<u>국가유산이</u>
<u>국가유산의</u>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 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u>국가유산의</u>
,
제5장 <u>매장유산 조사기관</u> 제24조 <u>(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u> 록) ① <u>매장유산</u>

한	기관	난(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 1. 2. (생략)
-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u>매장문화재</u>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 4. 5. (생략)
- ② ~ ④ (생 략)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 3. (생략)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 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 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

<u>.</u>	
1. • 2. (현행과 같음)	
3	_
<u>매장유산</u>	_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①	_
	_
	_
	_
	_
	_
	_
	_
	_
,	
1. ~ 3. (현행과 같음)	
4	_
	_
	_
	_
	_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된	<u>牛</u>

 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

 인정한 경우
 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

5. ~ 7. (생략)

- ② (생략)
-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

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자연유산
위원회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유산
<u> </u>
•
.
세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
른 토지 등의 매입) ①
<u>국가유산</u>

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 행	또
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7	경우
국;	가 또는 지	방자치딘	체는	해
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	있다.
다	만, 국가 또	는 지방	자치덕	단체
나	대통령령으	로 정히	는 별	법인
0]	시행하는	건설공시	·인 기	경우
에 -	는 제외하다			

②・③ (생략)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 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u>매장</u> 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문화재청장은 <u>매장문화재</u>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 인된 <u>매장문화재</u>의 기록을 작 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 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
<u>의 기준) 매장유</u>
산
<u>.</u>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매장유산
<u>.</u>
·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u> </u>
<u>매장유산</u>

강구하여야 한다.

-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매장문화재</u> 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 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나 임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u>매장문화재를</u>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 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u>매장문화</u> 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 었거나 발굴 중인 <u>매장문화재</u>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u>매장문화재 발굴</u>의 정지나 중 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2)
매장유산
<u> </u>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정문화
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
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
나 임시지정자연유산 매장
<u> </u>
매장유산을
<u>매장유산 유존지</u>
<u>역</u> <u>매장</u>
유산 발굴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⑤ (생략)
-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u>매장</u>문 <u>화재를</u>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 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 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생	략)
_	` _	

<u>.</u>
③
<u>국가유산을</u>
4
<u>국가유산</u>
⑤ (현행과 같음)
⑥ <u>매장유산</u>
<u> </u>
⑦ (혀해과 같음)

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 (생 략)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u>지정</u> 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관 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 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 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u>문화</u> 개를 몰수한다.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 ① (생략)
- ② 제13조에 따른 <u>매장문화재</u>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8)			
<u>국가유산은</u>			
제32조(가중죄)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정문</u>			
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			
<u> 자연유산을</u>			
.			
제34조(과실범)			
국가유산			
<u> </u>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 <u>매장유산</u>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u>문화재</u>	1 국가유
보존조치 명령	<u>산</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